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공고 제 2025 - 3호

-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2차년도) -2025년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2차년도)』의 일환으로 국내 전국 광융합산업체 차세대 유망 제품의 대한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LUXKO 공동브랜드,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 해외시범설치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광융합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2차년도)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 해외시범설치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5. 2. 17(월) ~ 3. 18(화) 17:00까지(30일간)

- 사업기간 : 지원기업 선정 후 각 지원사업별 아래 표 참조

구분	- 기원사업명(프로그램)	사업기간	최대지원금(천원)
1	광융합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사업 선정 후 ~ '25. 6. 30(금)	10,000
2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	지원사업 선정 후 ~ '25. 6. 30(금)	10,000
3	해외시범설치 지원	지원사업 선정 후 ~ '25. 6. 30(금)	20,000
4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2025. 5. 12 ~ 16	지원사항 참조
5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지원사업 선정 후 ~ '25. 10. 31(금)	5,000

○ 지원대상 : 전국 광융합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 보유 제조사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david@kapid.org)

※ 지원사업 신청 시 자사 양식을 활용한 지원사업 신청공문 제출 必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마케팅팀 정동환 전임(062-605-9614)

2. 사업 목적

- 전국 광융합산업체 차세대 유망 제품의 대한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글로벌 LUXKO 공동브랜드 시험검사 지원, 해외시범설치사업 등 국내 광융합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성장동력 제공
- 미주 UL, 유럽 CE 수준에 버금가는 기술·제품의 신뢰성 인증 시험검 사 지원으로 LUXKO 광융합 공동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성과확산마케팅을 통한 공동브랜드 및 해외 시범 사업 성과 확산 및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 해외 진출 기회 증진

3. 지원기업 선정기준

- O 사업비의 적합성 등을 고려 7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는 지원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중복성 심사) 중복으로 판정된 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의견 기재 후 지원대상 제외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 최종성과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ㆍ 지원이 확정된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 ※ 선정 세부기준 및 평가사항 (별첨2 참조)

4. 지원 내용

(단위 : 천원, %)

지원항목	지원내용	세부내용	최대 지원금	기업 자부담	지원 목표	총 지원금
		○ 광융합기술을 활용한 시장선도형 신규제품				80,000
	광융합	<u>시제품 제작지원</u>				
광융합제품	항용합 차세대 유망 제품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원사항 : 재료비(재료, 원료등),	10,000	20% 이상	8건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기구회로 설계, 목업 등),				
지원		설비구입비(SW 등) 등				
		- 결과물 검수 :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확인				
		(제품, 설계도면 등)				
공동브랜드	광융합제품	○ 광융합 제품 시험검사 지원	10,000			70,000
제품 시험인증		- 지원사항 : 광융합제품 시험검사비 및 인증		30%	7건	
및 규격제정	시험검사	취득비 지원		이상		
고 표현제 6 - - - 지원	지원	- 결과물 검수 : 결과보고서 확인				
시권		(신청 제품 시험 인증서 등)				
		○ <u>해외시범설치 지원</u>				40,000
	해외	- 지원사항 : 제품 설치비, 현지 운송 물류비		설치		
해외시범설치	프로젝트	및 통관비 100%	20,000	대상	2건	
지원	시범설치	- 결과물 검수 : 결과보고서 확인		제품		10,000
	지원	(신청 추진전략 대비 설치 결과		현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및 성과(계약 등))	지원 사항 - 참조			
		○ <u>2025 일본 광융합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u>				
		- 파견국가 : 일본(도쿄)				
		- 파견일정 : `25. 5. 12 ~ 16				
해외		- 지원사항				
시장개척단		지원항목 세 부 내 용 행사장 임차비 수출상담장 임차비 100%		-	5개사	30,000
파견 지원		항공료 Economy Class 기준 기업당 1인 70%				
		기타 통역 및 공동차량 지원 - 결과물 검수 : 결과보고서 확인				
		- 물퍼물 유구 . 물퍼포고시 복단 (파견결과 및 증빙자료 등)				
		※ 상기 지원사항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해외전시회 = 개별참가 - 지원 -	○ <u>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u> - 지원사항	대지 임차료 5,000 및 장치비 30%			
				대지		
해외전시회		지원항목 세 부 내 용 부스비 대지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임차료		
애외전시외 참가지원		O 소 H		및	14건	70,000
급기시권 		* 30만원 이내				
		항공비 왕복 항공료 60%(1인 Economy dass7준) - 결과물 검수 : 결과보고서 확인		30%		
		- 물퍼물 남구 . 물퍼보고시 확인 (파견결과 및 증빙자료 등)				
		(퍼션널파 풋 ㅎ 6시표 ㅎ)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에서 부담 원칙(공급가액 기준 지원)

5. 지원 절차

5. ME 2M						
절차	주체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지원기업 공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지원기업 모집 통합 공고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및 기업 지원 유관기관 공고를 통한 모집 ※ 지원기업 중도 포기 시 기 모집기업 중 추가선정 추진				
$\hat{\Upsilon}$						
지원기업 접수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일괄접수				
Ŷ						
지원기업 분류 및 선정평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Ŷ						
선정결과 통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지원기업	- 선정평가 개최 후 7일 이내 결과통보				
Ŷ						
지원사업 추진	지원기업	- 기업별 선정 지원사업 추진				
Ŷ						
기업지원사항 점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지원기업	- 지원기업 대상 기업 지원 사업 진행 사항 점검				
Û						
결과보고	지원기업 →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기업지원 결과보고				
Û						
지원기업 현황 및 성과 DB 관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DB 구축 등				

6. 지원 제외대상(결격사유)

- 사업자등록증 내 제조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기업일 경우
- O 사업기간(협약기간) 내 결과물 제출(예: 인증지원의 경우 성적서, 인증 취득 등)이 불가한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 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O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O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O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신청 제품은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지급 불가

- 중복지원 시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제한
- 관련문서(첨부서류 등)의 허위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의 경우 선정 평가 이후 전시회 변경 불가

○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항을 위반한 경우
- 허위 계약체결 시(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업공고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제품에 대해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사업기간중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
- 지원기간내 기업부담금 미납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출 서류

O 지원 참가 신청서류(아래에 정한 순번대로 제출)

구분	세부서류	문서 번호	필수 여부		
	자사 양식을 활용한 참가 신청 공문	-	0		
(1)	통합지원 참가신청서 양식1		0		
(2)	시제품 제작 지원 세부 신청서 및 견적서	양식2			
(3)	광융합제품 시험검사 지원 세부 신청서 및 견적서	양식3			
(4)	해외시범설치 지원 세부 신청서	양식4	해당기업 제출		
(5)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세부 신청서	양식5			
(6)	해외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세부 신청서	양식6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0		
(8)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0		
(9)	기타 참고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특허증, 혁신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	해당기업 제출		
	* 지원사업 신청 시 자사 양식을 활용한 지원사업 신청 공문 제출 必				
	* 각종 증명서, 인증서,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등이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각 서류 첨부 순서는 반드시 번호순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기타참고서류(중소기업 확인서, 특허증, 혁신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